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7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1)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2)
- 바.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운임표 수정(별표3)
- 사.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고시의 발령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변경(부칙)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8, 4019, 4020(팩스 044-201-560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